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 대표 예술단으로서의 대외적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구미시립관현악단」 명칭을 「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」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미시립관현악단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(당초) 구미시립관현악단 → (변경)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구미시립관현악단”을 각각
“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등을 둘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구미시립관현악단</u>: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구미시립관현악단</u>: 10세부터 22세까지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</u>: 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</u>: -- -----</p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생략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과 장	김 종 미
	팀 장	강 진 선
	담 당 자	심 지 현 (480-4564)